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081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081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15 선고 2019나20341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5010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정원, 조장혁, 조희태, 김택수, 유관동

피고, 피상고인대한민국

판결 선고2021. 11. 25.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2. 15. 선고 2019나2034105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E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납품한 시제품이 군 운용 적합성 항목에서 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의무는 피고가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과 군 운용 적합성 항목에서 정한 성능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운용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시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거나 평가방법상 오류가 있는 등 위 운용시험평가가 부적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의 해제통보는 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해제통보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계약보증금 등이 신의칙상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요건,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및 계약대금 환수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